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임직원 10인	○ 과태료 750만, 450만, 130만, 90만, 100만, 70만, 20만 등 부과

2. 조치내용

◦ 甲 : 과태료 750만원 부과

◦ 乙 : 과태료 450만원 부과

◦ 丙 : 과태료 130만원 부과

◦ 丁 : 과태료 90만원 부과

◦ 戊 : 과태료 90만원 부과

◦ 己 : 과태료 100만원 부과

◦ 庚 : 과태료 70만원 부과

◦ 辛 : 과태료 부과 면제

◦ 壬 : 과태료 부과 면제

◦ 癸 : 과태료 20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
□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,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함에도

◦ 甲, 乙, 丙, 丁, 戊, 己, 庚, 辛, 壬은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1회 ~ 5회 통지하지 않았고,

◦ 癸는 공모주를 청약받은 후 신고한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, 청약받은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법」 제449조 제2항
-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90조